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180

발의연월일: 2024. 8. 26.

발 의 자:김미애·곽규택·박덕흠

박준대 • 조은희 • 조승환

고동진 · 김성원 · 조경태

주진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, 가정폭력, 아동학대,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,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% 수준임.

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, 아동의 통장 발급, 휴대폰 개통, 수술·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.

참고로,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「민법」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,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.

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 아동의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 신설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)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 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자(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그 보호조치가 있던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- 1. 금융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에 관한 사항
- 2. 이통통신단말장치 개통에 관한 사항
- 3. 수술 · 입원 등 의료에 관한 사항
- 4. 학교 생활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
- 5. 그 밖에 일상 생활에서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. 이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권한 행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 행사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0조의2(제한적 범위의 권한
	행사)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
	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
	자(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
	보호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이
	조에서 같다)는 그 보호조치가
	있던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
	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
	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
	해당 아동의 법정대리권을 행
	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아
	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	1. 금융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
	에 관한 사항
	2. 이통통신단말장치 개통에 관
	한 사항
	3. 수술ㆍ입원 등 의료에 관한
	사항
	4. 학교 생활에서 친권자의 동0
	의가 필요한 사항
	5. 그 밖에 일상 생활에서 친권
	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
	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

로 정하는 사항

- ②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 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 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, 권한 행사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에 따른 법정대리권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권 행사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